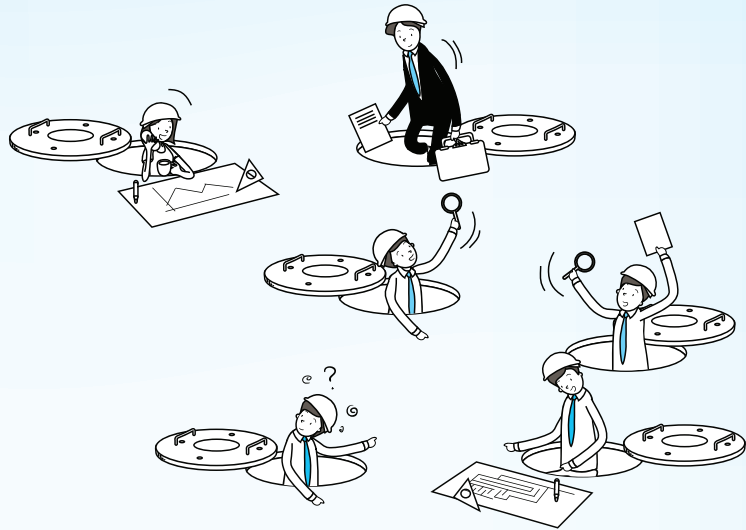


해외건설현장 사고 상황 대비 초동조치 매뉴얼

자료제공 :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



I. 초동조치 매뉴얼

1. CASE 1 : 테러 · 피습으로 인한 사상자 · 피랍 발생
2. CASE 2 : 자연재해 · 사고로 인한 사상자 발생
3. CASE 3 : 전염병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

II. 국토교통부의 향후 안전점검 계획

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발표했다. 이 중 하나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피습, 자연재해, 전염병 등 재난에 대해 해외 건설현장 및 건설사, 해외건설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서 조치해야 하는 3 단계 대처 사항 발표했다. 찾아보기 어려운 백과사전식 구성에서 탈피해, 각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, 각 단계별 보고체계와 행정절차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. 해외건설현장이 있는 회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[편집자주]

I 초동조치 매뉴얼

Case 3 전염병에 의한 사상자 발생

① 개요

- 2000년 00월 00일 00시 E국 F시에서 MERS(중동호흡기증후군) 발생, 확산 중에 있으며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수십 명 감염 가능성 있음

② 세부내용

- 일시 : 00. 00. 00(월요일) 13:30
- 위치 : E국 00건설 0000현장 내
- 아국인 피해상황
 - E국 F시 외곽에서 플랜트 건설공사에 참여 중인 아국인 건설근로자 10명 감염 추정, 추가 감염 가능성
- * 현재 감염자 신원 파악 및 감염정도 파악 중
- F시 재외국민 거주현황
 - 우리업체 해외건설현장(우리 기술자 10명)
 - MERS 발생지역에서 20km 떨어진 곳에 35명 교민거주

③ 조치사항

- 기관별(복지부) 위기경보 접수 보고 및 신속 전파
- 건설근로자 인적사항 확인, 전염병 추세파악 보고
- 현지공관, 외교부, 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와 협조체제 구축
- 건설현장 환경위생/개인위생 관리 강화
- 범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시 지원 수행(필요시)

1. 주요사항

* 처리시한은 참고사항이며,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계별 조치 수행

(1) (1단계 : 30분 이내) 응급조치 및 발생상황 신속 전파(先조치 後보고)

- 현지 의료기관에 감염자 후송 입원 및 격리 조치 등 시행
 - 의심환자에 대한 자택격리 및 병원 후송
- 관계기관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가동
 - ① 현지 의료기관·방역당국 → ② 재외공관, 본사(지사), 발주처 → ③ 외교부, 보건복지부, 국토부(해외건설협회) 순으로 연락
- *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, 해외건설업자는 ‘시공상황, 공사내용 변경 및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’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특히 각종 사고의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

(2) (2단계 : 1시간 이내) 현장상황 파악 및 잔여 근로자의 검진 격리

- 감염자와 접촉자 격리 조치, 잔여 근로자 의료기관을 통한 조속한 검진 협의 및 근로자간 접촉 이동 자제 등 관리강화

(3) (3단계, 3시간 이내, 4단계 : 6시간 이내) 환자관리 운영 체계도에 따라 신속조치

- 현지 의료기관 협조 하에 신속한 검진실시, 방역조치, 역학조사 협조 및 추가 의심환자 격리 조치(통상 72시간)
- 주관기관(복지부) 의료지원반 등 전문가 파견 시 적극 협조
 - ※ (상황전파 즉시)
- 상황 접수 후 장·차관 보고
- 외교부·복지부·재외공관, 피해업체와 협조체제 구축
- 감염자(사망자) 인적사항 파악

2. 초동조치 매뉴얼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1단계 / 30분 이내
해외 건설현장	사전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연락체계 구축(현지군경·의료·재외공관) ○ 현지 의료기관에 환자 후송 입원 및 격리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의심환자에 대한 자택격리 및 병원 후송 ○ 현장 비상대책반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책임자 설정, 개인별 업무카드 작성·숙지
해외 건설현장	최초 상황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대책반 가동, 상황파악 및 보고 지시 ○ 방역활동 및 필요시 응급구호활동 지시
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대책반 가동, 상황파악 및 보고 지시 ○ 방역활동 및 필요시 응급구호활동 지시
	관리팀장 (부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①현지경찰/의료기관 → ②재외공관, 본사 → ③외교부, 복지부, 국토부(해건협) 연락조치
	안전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 내 사상자 긴급 구조 및 대피 지시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고체계에 따라 본사 담당자에게 상황전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현지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신고 및 발주처와 협조체계 구축 ○ 현지 공관과 비상연락망 가동
	본사 담당자	
유관기관	제외공관	
	외교부·국정원	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

참고: 사건 · 사고보고양식(안)

국가 및 공사명	국가: _____ 공사명: _____					
대인사고	사망	(명)	부상	(명)	부상정도	
대물사고	종류		피해액수			
사고경위						
기타사항						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2단계 / 1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망자, 감염자 현황 등 종합적인 상황 파악 ○ 잔여근로자 현장 내 비상대피 지시
	관리팀장 (부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에 추가 방역 요청 - 현지 기관 연락 불가시 연락체계 순서에 따라 지사(본사), 대사관, 발주처 등에 수시 상황보고
	안전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의료기관 등이 출동하기 전 감염자에 대한 응급구호활동 실시(대피장 소로 이동 후) ○ 지시에 따라 추가 감염자 확인 → 현장소장, 관리팀장에게 동시 보고(서면 등)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연락 및 모니터링 조직 가동 ○ 본사 · 현지 공관에 구체적인 상황 보고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교부와 국토부(해건협), 국토부에 상황전파 ○ 현지 발주처, 가능하다면 정부와 연락체계 구축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정부, 의료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○ 외교부와 복지부, 국토부에 즉시 상황 전파 * 현장인력이 적을 경우, 대사관 직원 파견 검토
	외교부 · 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재외국민보호 위기대응 매뉴얼」 가동 ○ 「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」 가동 ○ 관계기관에 상황 전파 및 협조체제 구축 ○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가동 ○ 전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대응태세 점검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 · 차관 보고(건설정책국장, 또는 해외건설지원과장) 관련기관(국토교통 비서관실, 국가안보실 등) 상황 전파(수시) ○ 외교부, 복지부 등에 해당국 진출기업 현황 등 정보공유 ○ 본사 · 지사와 협조체계 유지(해건협)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3단계 / 3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기관에 현장상황 보고(사상·감염자 수, 신원 등) ○ 부상자 구호, 사망자 수습(현지 의료기관 협조)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현장 철수시</td> <td>○ 전염병 전국 확산 등 위기상황 고조시 현장 철수 여부 결정 - 대피 전 공사필수요원 선정(상황에 따라 유동적)</td> </tr> </table>
현장 철수시	○ 전염병 전국 확산 등 위기상황 고조시 현장 철수 여부 결정 - 대피 전 공사필수요원 선정(상황에 따라 유동적)	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장·병원 등에 직원 파견 - 사상자/감염자 신원·피해상황 파악 ○ 발주처·본사에 현재 상황 보고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관, 복지부, 본사와 협의하여 감염자 의료지원, 국내후송 등 협의 ○ 동일국가 타 현장에 전파, 협력사항 파악 및 협조 ○ 외교부와 복지부, 국토부(해건협) 등에 상황전파 ○ 외교부, 복지부, 국토부에 이동인원, 방법, 수단 등에 대해 알리고 지원을 요청 * 복지부에서 현지 대책반 파견 등 검토 필요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상자 후송을 위해 현지 정부의 협조 요청 ○ 다른 현장 및 주재국 교민에게 안전조치 당부 ○ 제3국 또는 본국으로 이동을 위한 제반사항을 외교부, 국토부와 협의
	외교부·복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○ 전염병 발생 추세파악 및 지침마련 시달 ○ 확산대비 근로자 이동, 접촉 자제 검토 및 시달 ○ 해당지역 여행자·체류자 대상 대피 SMS 발송
국토부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○ 관련정보 전파 등 활동 강화 ○ 전염병 발생현황 및 추세 파악 보고 ○ 전염병 발생우려 단체활동 자제 권고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4단계 / 6시간 이내
해외 건설현장	현장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진행현황, 피해상황 확인 작업 착수 - 작업일지 확보, 전염병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 증빙 확보 ○ 시신 수습(현지 의료기관 협조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필수요원을 제외한 인원 이동 준비 - 현지 경호업체와 최종 협의 후 이동
건설업체	현지 지사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주처·본사에 피해현황 상황보고 ○ 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
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교부와 복지부, 국토부(해건협)에 상황전파

구분		임무 및 역할(조치사항) - 4단계 / 6시간 이내
건설업체	본사 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대피경로상 안전확보를 위해 현지 정부에 협조 요청 ○현장 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 ○관리책임자 현지 파견(필요시)
유관기관	제외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추가 사상자 조치를 위한 병원 확보 ○사상자 가족을 위한 숙소 및 차량 등 지원 ○주재국내 사상자 본국 후송 및 행정 절차 조치 ○유관기관과 정부지원 규모 및 방법 논의
	외교부·국정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최종 대피지역 및 현장(접근가능시)으로 직원 파견 ○지사, 현장내 공사필수인력과 연락체계 유지
국토부·해외건설협회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잔여 근로자 수송을 위한 대책 협의 ○사상(감염)자 인원 파악 및 향후 대책방안 협의 ○항공사 및 장례업체와 항공기 수송협의 개시
국토부·해외건설협회	(정)건설정책국장 (부)해외건설지원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대책반 현지 급파 - 해당국가 협의 후 필요시 의료지원팀 파견 ○해외건설근로자 해당국 입국금지 조치(외교부 협의) - 해당국가 내 추가 건설현장 피해사항 파악(업체 협의)

법정 전염병 현황

구분	분류 기준	전염병명
제1군 법정 전염병	○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염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콜레라, 페스트, 장티푸스 -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 -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
제2군 법정 전염병	○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·관리가 가능 하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프테리아, 백일해, 파상풍 -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풍진 - 폴리오, B형간염, 일본뇌염, 수두
제3군 법정 전염병	○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말라리아, 결핵, 한센병, 성병 - 성홍열, 수막구균성수막염 - 레지오넬라증, 비브리오패혈증 - 발진티푸스, 발진열, 쯤쯤가무시증 - 렙토스피라증, 브루셀라증, 탄저 - 공수병, 신증후군출혈열, 인플루엔자 -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
구분	분류 기준		전염병명
제4군 법정 전염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, 증후군, 재출현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황열, 뎅기열, 마버그열, 에볼라열 - 라싸열, 리슈마니아증, 바베시아증 - 아프리카수면병, 크립토스פור리디움증 - 주혈흡충증, 요우스, 핀타, 두창 - 보툴리눔독소증,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(SARS) -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, 아토틀 - 규열, 신종전염병증후군
지정 법정 전염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염병 	환자 감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형간염, C형간염,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 - 상구균(VRSA)감염증, 샤가스병 - 광동주혈선충증, 유극악구충증, 사상충증 - 포충증,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, 웨스트나일열
		병원체 감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살모넬라균 감염증,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- 장독소성대장균 감염증 (ETEC) - 장침습성대장균 감염증 (EIEC) - 장병원성대장균 감염증 (EPEC) -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-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-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증 -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-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-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-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-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,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- 노로바이러스 감염증, 이질아메바 감염증 - 람블편모충 감염증

해외 건설현장에 대한 철수 조치 관련

-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단계에 따라 행동할 것 -

- ① 「여행제한」 또는 「특별여행경보」발령(외교부)
 - 여행경보제도 3단계 후 위기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
 - 외교부, 국정원, 업계와 현장철수 여부에 대한 논의
 - ☞ (업체) 근로자 가족 및 非필수요원의 안전지대(제3국) 조속 대피 또는 철수
 - ☞ (정부) 여행경보 상향조정 및 현장철수 조치 검토

② 여행경보제도 4단계「여행금지」경보 발령(외교부)

- 무력분쟁 · 폭동 · 자연재해로 건설현장 또는 건설기업이 밀집한 지역에 위험상황 발생이 임박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할 경우
- 교민 체류지역 소요 · 폭동, 무력분쟁 · 전쟁 발생
- 건설현장 피습, 근로자 살해 등 심각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였거나,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위험 상존
 - ☞ (업체) 외교부의 여행금지 경보에 따라 해당국 건설현장 즉각 철수
 - ☞ (정부) 주재국 진출 건설기업 및 해외건설협회에 관련내용 전달
- * 현장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 긴급 철수를 명령하고, 인력의 현황 및 희망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 철수계획 통보 지시

주요 · 유관기관 연락처

● 국토교통부

구분	전화	팩스
행정사무관	044-201-3529	044-201-5547
행정주사보	044-201-3534	

● 유관기관

기관명	관련부서	전화	팩스
외교부	재외국민보호과	02-2100-7588	02-2100-7974
	여권과	02-2100-7592	02-722-8489
	재외동포영사대사	02-2100-8053	
	국제안보과	02-2100-7283	
문화체육관광부	종무2담당관	044-203-2321~6	044-203-3463
보건복지부	비상안전기획관	044-202-2391~5	044-202-3922
	질병관리본부	043-719-7240~51	
해외건설협회	지역2실	02-3406-1091, 71	02-3406-1126
KOICA	해외관리팀	031-740-0592	031-740-0597
KOTRA	비상계획실	02-3460-7051	02-3460-7909
대한적십자사	재난구호팀	02-3705-36914	02-3705-3639

II 국토교통부의 향후 안전점검 및 훈련계획

① 해외진출 기업 및 근로자 보호 강화

- 비상연락체계 점검, 초동조치 매뉴얼 전파·반영 지시
 -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해외 건설현장에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제 유지(각 대사관 협조)
- 해외 위험지역 건설현장 합동 안전 점검 실시(연2회)
 - 국정원, 외교부와 함께 테러 위험국 내 건설현장 점검 시행
 - * 외교부와 국정원이 지정한 테러 위험국가 29개국(13년 기준) 중 리비아, 이라크, 필리핀 등 해외건설기업 진출이 활발한 8개국을 해외건설 대테러위험국으로 별도 선정
 - * 2014년 상반기, 리비아, 알제리 2개국 점검(4.21~5.3)
- 정부간 테러 예방 및 대응 협조체계 구축 MOU 체결 추진
 - 중동·북아프리카 국가에 수주지원단 파견시 현장에 대한 테러상황 전파, 정보공유, 대응조치 협의에 협조하도록 정부간 협력 강화

② 기업 및 현장의 대테러 의식 제고

- 대테러 모의훈련 실시(상·하반기 2회 실시)
 - 테러 위험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 건설현장에 시나리오를 교부하여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보고토록 조치
 - * (협조요청) 각 공관에서는 모의훈련 담당자를 1명 지정하여 우리부로 통보
- 진출기업에 대한 대테러 교육 시행(연2회)
 - 본사를 대상으로 초동조치매뉴얼,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내용을 현장으로 즉시 전파토록 조치

